

편집자주에 대한 반론권을 새로운 테마를 문제삼을 경우에는 부여되지 않아

올덴부르크지방법원 1985. 11. 5 판결

-503335/85 사건-

적용법조

니더작센주 언론법 제 11 조

판시사항

편집자의 주에 포함되어 있는 사실상의 주장에 대하여도 원칙적으로는 반박문의 게재청구가 허용된다. 그러나, 그 반박문이 원문기사와 관련되어 있기는 하나, 새로운 테마를 문제로 삼는 경우에는 원문기사에 대한 필연적인 관련성이 없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반박문의 게재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

사실개요

피고는 그가 발간하는 신문의 편집기사에서 원고의 재정상태에 관련하여,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들은 「G 정당」의 재정운영을 수년동안 추적하여 조사한 독일연방언론국의 내부조사문서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반박문을 게재하였는 바, 위 점에 관한 위 반박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즉 「피고 신문은 G 정당의 재정운영상태를 수년동안 추적하여 조사한 독일 연방언론국의 내부분서가 존재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위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위와 같은 문서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위 반박문에 대한 편집자의 주에는 다음과 같은 주장이 있었다. 즉 「G 정당의 재정실태에 관한 연합언론국의 내부분서는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다. 위와 같은 주장은 피고신문사의 특파원의 보고에 기하여 행해진 것이다.

그런데 이미 수주일 전에 간행된 「Die Sonde」 라는 잡지의 편집기사에도 위 문서의 중요한 내용들이 이미 게재된 바 있다.

원고는 가처분결정의 신청을 함과 동시에 위 피고의 편집자 주에 대하여 새로운 반박문게재의 청구를 하였다. 원고는 위 편집자 주는 다시금 허위의 사실상 주장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리하여 원고에게는 새로운 반박문게재청구권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였다.

판결이유

위 원고의 신청은 이유없다. 왜냐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위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1985년 10월 7일자 피고의 편집자 주에 대한 새로운 반박문게재청구권이 원고에게 허용된다고 인정할수가 없기 때문이다. 니더작센주 언론법 제 11 조 제 1 항은 정기간행물에 게재된 사실상의 주장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위 사실상의 주장에 대하여 반박문의 게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위 반박문게재의 청구는, 원문기사가 니더작센주 언론법 제 11 조 제 3 항 제 4 문에 의하여 허용되는 이미 게재된 반박문에 대한 「편집자의 주」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허용된다. 다만 이 경우에 필요한 요건으로서 반박문에 대한 편집자의 주가 원문기사의 내용을 초과하고, 이미 게재된 반박문의 내용을 단순히 반박함에 그치지 아니하는 새로운 주장을 포함하고 있을 것이 요구된다(LG Hamburg, Archiv fur Presserecht 1970, 83 : OLG Munchen, Archiv fur Presserecht 1972, 101 : Loffler, Presserecht Bd 1, 3, Aufl. 511 LPG Rdnr 56 und 100 : Seitz/Schmidt/Schoner, Der Gegendarstellungsanspruch, Rdnr. 241 : Wenzel, Das Recht der Wort- und Bildberichter stattung, Rdnr. 8.35 참조).

그런데 본건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요건들이 충족되어 있지 않다. 왜냐하면 피고의 위 편집자 주는 하등의 새로운, 전에 아직 주장되지 아니하였던 사실상의 주장을 포함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즉, 이미 위 원문기사에서부터, 위 공표된 정보는 연방언론국의 내부분서에 기초한 것이라고 주장되어 왔던 것이다. 위와 같은 범위에 있어서는 1985년 10월 7일자의 반박문에 대한

편집자의 주는 단지 원래의 보도에 대한 반복만을 하고 있는 것으로서 이로써는 하등의 반박문게재청구권을 발생시키지 않는 것이다(Löffler/Rieter, Handbuch des Presserechts, Seite 126).

그 밖에 본건에 있어서는 「위 문서의 중요한 부분」은 「Die Sonde」라는 잡지의 편집기사란에 게재되어 있다고 기술되어 있다. 위와 같이 추가된 부분이, 그 주를 기초한 자의 견해에 의한다면, 위 내부문서가 최초로 위 사실을 공포한 것인지 또는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같이 이는 단지 앞서본 기사를 기초로 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인지는 분명하지 아니하다. 위 내부문서와 Sonde 잡지의 기사 중 어느 것이 먼저 작성된 것인지에 대하여는 언급함이 없이 다만 그 일부분만이 서로 동일하다고 하는 주장은 이를 새로운 사실상의 주장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을 것이다. 위와 같은 지적은 이전에 주장한 것을 변명하는 데에 그치는 중요하지 않은 점에 대한 보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종류의 설명은 종전의 보도를 고수하는 것으로서, 이를 초과하는 새로운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이다.

그리고 전문기사에 대한 위 편집자의 주가 새로운 사실상의 주장해라고 평가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형식으로서 반박문게재청구권이 성립될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반박문게재청구권의 입법취지에 의한다면, 반박문은 원문기사에서 주장된 사실들과 서로 사상적인 관련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기사와 서로 관계가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진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실들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새롭거나 보충적인 사실의 게재를 청구할 권리는 없는 것이다(Löffler, Presserecht, § 11 LPG Rdnr. 117; Seitz/Schmidt/Scofner, Rdnr. 124; Wenzel, Rdnr. 8.86).

신청인은 반박문의 내용으로서, 이 사건에서 문제된 피신청인의 기사작성에는 연방언론국의 문서가 기초로 된 것이 아니라, 「Die Sonde」라는 잡지에 실린 기사의 요지가 기초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그리하여 원고는 이미 피고의 원문기사에서 주장되었고 다시 편집자의 주에서 반복 주장된, 문제의 연방언론국의 내부문서가 정보의 근원이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그 밖에 원고의 반박문은 「Sonde」잡지에 실린 기사가 연방언론국이 가지고 있는 문서를 기초로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때문에 본건 반박문은 연합언론국으로부터 흘러 나왔다는 위 정보의 연원에 대한 새로운 전혀 별개의 테마에 관련되고 있는 것이다. 위 테마에 관하여는 「편집자의 주」란에 실린 원문기사에서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는 부분인 것이다. 반박문에서 보충적인 사실들을 진술하는 것이 피해자에게 금지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들은 피해자 자신의 진술을 강화하는 것이거나 또는 원문기사의 일방적이거나 또는 불완전한 진술의 효력을 약화시키는 효력은 이를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다(Seitz/Schmidt/Schener, a.a.O.). 그러나 본건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였다. 본건에서 독자들은

원문기사를, 편집자가 주를 붙인 이유는 「Sonde」 잡지의 기사를 피고의 주장 즉 연방언론국의 위 문서는 존재하는 것이라는 점에 대한 증거자료로써 삼기위한 것이었다고 이해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만약 그러하다면 원고는 이러한 주장에 대하여 사실상의 진술을 함으로써 이에 대항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건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았다. 위 문서를 「내부 문서」라고 표현한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이는 사실상의 주장이 아니라 단지 가치판단에 지나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다. 위 의사표시의 핵심은 오히려 연방언론국의 문서의 현존이라는 점에 있는 것이다. 그리고 역시 편집자의 주에 있어서도 원문기사나 1985년 10월 7일자의 반박문의 경우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위 문서의 존재가 그 중점이 되었던 것이다. 1985년 10월 7일자의 반박문이 위 명백한 문안과 관련하여, 지금 문제로 된 위 문서의 질, 즉 문서의 「정보가치」에 관한 위 주장은 새로운 테마로서, 결코 「반박문」이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다. 원고는 현재에 이르기까지 위 「내부문서」의 존재를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원고에게는 이제 위 문서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리고 피고의 비용으로써 새로운 방어 즉 정보가치의 흠결을 주장할 법적인 근거가 원고에게는 인정될 수 없는 것이다.

피고가 반박문게재청구권의 법리로부터 판단하여, 1985년 10월 7일자 반박문에서 연방언론국의 위 서면의 질의에 대한 그의 주장을 개선할 권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설명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의 반박문이 게재된 이후에 또 하나의 보충적인 반박문을 동일한 원문 기사에 대하여 게재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즉 하나의 기사에 관련되는 모든 반박문게재의 의사표시는 하나의 반박문게재 청구권으로 통일해서 주장하여야 하는 것이다(Wenzel, Rdnr. 8.31), 그리고 그 반박문을 게재함으로써 그 청구권은 이행된다. 피해자가 개개의 주장에 대하여 반박문의 게재를 청구하지 아니하면, 나머지 부분에 대한 반박문게재청구권은 소멸되게 되는 것이다. 즉 「분할해서 청구할 수 있는 반박문게재청구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위와 같은 결론은 법의 입법취지로부터 도출된다. 왜냐하면, 니더작센주 언론법 제 11조에 규정된 반박권의 형식 및 그 기간에 비추어 보면, 반박문게재청구권은 한꺼번에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기 때문이다. 유일한 예외로서 생각될 수 있는 경우는 예를 들어 피해자가 원문기사의 일부에 대해서는 즉각 반박을 할 수 있었으나,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아직도 좀더 조사를 해보아야 할 경우를 들 수 있다.(Wenzel, a. a. O.) 그러나 본건에 있어서는 원고가 위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가 성립할 수 있는 요건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주장하지도 아니하였고, 또한 이러한 사유가 있다고도 보여 지지 아니한다. (「편집자 주」라 함은 언론사에서 반박문을 게재하면서 이에 부가하여 붙인 언론사측의 주를 말한다.)